

수원지방법원 2020. 5. 28 선고 2019가합25229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유세

피 고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20. 5. 2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가. 99,000,000원 및 그 중 49,5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5. 31.부터 2019. 8. 5.까지는 연 5%의,나머지 49,5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7. 1.부터 2019. 8. 5.까지는 연 5% 의,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고,나. 297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8. 2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재판장 판사 이현영판사 박병곤판사 최현정

별지